

제418회 국회  
(정기회)

#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9월5일(목)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4)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4)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2)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4)
-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요청안
-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4)	1
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4)	2
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2)	2
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4)	2

(10시59분 개의)

## ○위원장 정청래 의사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고유법 4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보류됐던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바로 법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1시00분)

## ○위원장 정청래 법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59조에서 규정한 숙려기간 15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를 상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4)

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4)

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2)

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4)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안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외국인·외국인 단체를 위한 간첩'으로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대의 다원화된 국제 환경 속에서 국가의 외적 안전이 반드시 적국에 의해서만 침해 받는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적대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간첩행위로 처벌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인정된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을 위한 간첩의 범위에 외국법인을 위한 간첩도 포함되는 등 처벌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바 현행 형법상 간첩죄가 적국을 위한 간첩을 처벌하는 것임에 비추어 외국을 위한 간첩 또는 외국인을 위한 간첩 등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것은 죄형 균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김용민 의원과 장동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 개정안은 법관 임용자격인 최소 법조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김용민 의원안은 법조경력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장동혁 의원안은 3년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우수한 법관 확보의 어려움, 법관 고령화, 법조일원화제도의 전제조건이 아직 충분히 확립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조일원화제도의 도입 취지,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갖춘 법관을 임용할 필요성, 전관예우나 후관예우 가능성 등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 의사일정 제4항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근저당권 설정과 전입신고가 동일한 날 이루어져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부와 등기부는 처리하는 관할기관이 달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을 인정하여 같은 날 행해진 등기와 경합하도록 하는 경우 그 권리관계의 선후를 밝히기 어려울 수 있어 통합시스템의 구축 등 공시방법의 보완이 전제될 필요가 있고, 2022년 11월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서는 임대인이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기 전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해당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있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손 들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간사님 토론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장관님, 최근에 군 방첩부대에서 블랙리스트 요원에 대한 정보가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게 유출된 사례가 발생해서 국가적으로 국가안보에 큰 위기를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유상범 위원** 사실은 블랙리스트 요원이라고 한다면 그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기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각종 정보 수집, 첨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정보가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적국인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지금 사실 저희가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북한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유상범 위원**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보다 훨씬 경한 범죄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타개하기 위해서 간첩죄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가 논의는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이와 관련돼서 법무부에서는 간첩죄의 개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국제 정세가 변화되고 적국과 외국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방국 사이에서도 사안마다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적국을 위한 간첩죄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속의를 거쳐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행정처장님, 법조일원화를 위해서 법조경력 10년을 가진 사람들을 판사로 임용하자 하는 것이 사실은 사법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판사로 임관하는 것을 물론 10년으로 바로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기간을 연장해서 3년에서 5년 그리고 사실은 올해가 지나면 7년 경력을 가진 사람들 을 임관하는 이러한 법조일원화의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오늘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그와 같은 로드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법조경력을 5년으로 제안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법조경력 3년으로 제안하는 법안까지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법조일원화에 따른 10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판사로 임용돼서 좀 더 사회적 경험이 있고 합리적인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가 사실은 처음 예상과는 달리 실패했다고 양당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법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업** 위원장님, 혹시 허락해 주시면, 이 법안이 저희 사법부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법이라서 제가 직접 몇 마디 작성을 해 봤는데 조금 말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내 질문이니까 나한테 답을 해야지 왜 위원장……

○**법원행정처장 천대업** 아, 그렇습니까?

○**유상범 위원** 그것 끝나고 나서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는 거고.

○**법원행정처장 천대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답변하세요.

○**유상범 위원** 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업** 김용민 의원님과 장동혁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신 이 법안이 위원장님의 결단으로 전체회의에 회부되어서 심사 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밤을 낮 삼아 일하는 열정과 자질을 갖춘 사법부를 구성함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것이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3년 전인 2011년에 법조경력 10년을 목표로 설정된 법조일원화 제도가 전제했던 영미식 사법시스템, 즉 1심의 단독화, 재판장은 재판 진행만 담당하는 배심재판제, 대형 로펌 수준의 법관 쳐우 그리고 75세 전후 혹은 정년 없는 법관의 임기, 전국적 인사이동 없이 한 법원에 근무하는 생활의 안정성, 법관 일인당 2인 이상 로클러 지원 등은 언제나 경제적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나라 형편하에서 향후 수십 년이 지나더라도 성취하기 힘든 난제임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법조일원화의 대의명분에 동참하기 위해 그간 법조경력 요건이 5년까지 강화된 결과 대학 4년, 로스쿨 3년, 남성의 경우에는 군대 이삼 년 그리고 최소 5년 이상 법조경력 없이는 법관이 될 수 없게 됨으로써 법조일원화는 명실상부 완성되었고 단지 그

기간을 더 늘려서 10년으로 할지가 남은 상황입니다.

법조일원화를 도입한 나라를 비롯해서 외국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법관 선발에 있어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습니다. 법조경력 요건이 3년을 거쳐 5년까지 이르는 동안 법관 평균연령은 39세에서 45세로, 초임 법관 평균연령도 34세에서 39세로 급격히 고령화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년간 사건 처리 기간 그리고 장기 미제 사건의 급격한 증가로 나타나서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을 힘들게 하는 사법부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걱정들이 많고, 이 시점이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되는 사법부로서의 토대를 다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라 조금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오랜 법관 생활을 거치면서 법관의 꿈과 직을 계속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다른 가치를 아직 알지 못하고 공적 영역에 대한 열정의 불길이 살아 있던 시절에 법관의 삶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찍 법원 바깥에서 혹은 로펌 혹은 회사에서 커리어를 쌓아 간 법조 동료들보다 저희들이 세상의 물정과 다양함을 깨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 있겠지만 때 묻지 않은 열정이 전국의 수많은 법관들로 하여금 열악한 처우, 끊임없는 경향교류로 인한 가족 간 별리, 감당하기 힘든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법관으로서 본분을 지켜 나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현행 5년보다 더 강화된 법조경력제가 도입되는 순간 더 이상 경제적 성취 추구에 담쌓은 우직한 공의 추구자로서의 법관은 찾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할지 걱정이 있습니다.

확고한 가치관이 정립된 불혹이 훌쩍 넘은 나이의 법관이 자신이 몸담았던 특정 영역 가치 추구 구현에 더 적임자일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가치의 다양화는 자신과 다른 가치 조차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경우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는 용기를 갖춘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상범 위원**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처장님, 한 가지는 내가 동의할 수가 없네요. 사건의……

○**위원장 정철래** 지금 유상범 간사는 질의권이 끝났어요. 지금 위원장이 허락하는 시간이니까 더 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허락해 주시면 제가…… 위원님도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위원장 정철래** 유상범 위원이 끊을 권리가 이미 없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계속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초임 법관 평균연령 사십에 이른 법조경력 5년의 세대는 스무 살 성년이 된 지 20년이 지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때로부터도 5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의 사회적·직업적 경험을 갖춘 세대이자 아직은 열린 마음으로서의 다양성의 씨앗을 갖춘 세대일 수 있고, 그럼에도 그들이 법관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참으로 신중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통계상 법조경력 5년 이상 선발이 본격화된 2020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5년에서 6년 사이 법조경력자 임용은 70%에서 52%로 감소했고, 6년 이상 경력자 임용은 29.7%에서

47.9%로 늘었고, 같은 기간 7년 이상 경력자만 보더라도 2020년·2021년 평균 15.1%에서 2022년·2023년 평균 27.7%로 상승했습니다. 현재 성공리에 실시되고 있고 그 숫자와 영역이 확대 중인 20년 경력 전담법관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현재 사법부는 40세 전후의 5년 법조경력 법관과 40대 중후반 이후의 고경력 법관이 함께 어우러진 세대적 다양성을 갖춘 사법부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디……

○위원장 정청래 처장님, 얼마나 더 남으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러면 한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디 한쪽 세대 법조 풀의 수도꼭지를 걸어 잡그는 세대 단절 그리고 고령화된 사법부가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혜안을 바라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처장님, 지금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더 질의드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경력 7년 차 이상의 법조인들만 임용이 가능한 상황인 것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 5년 차 혹은 3년 차까지 법이 나왔는데 어쨌든 5년 차라고 치면요 5년 차냐 7년 차냐는 내년에 임용을 준비하는 분들도 그렇고 준비하는 법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임용 준비나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말씀 주실 수 있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이번 8월에 올해 법관 선발이 끝났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부터 내년도 법관 선발 준비를 해야 되고 또한 내년에 법관 지명하시는 분들, 특히 문제 되는 5년에서 7년 사이 그분들은 지금 현재 자신의 내년 거취를 어떻게 할지, 사실은 미리 거래 관계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저희들이 봐서는 너무나 크리티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기는 했고 또 한편으로 여기저기 시민사회 쪽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겁니다.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갖춘 법관을 임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법원이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지적이 하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관예우나 후관예우의 가능성에 여전히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런 지적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입장은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고경력의 20년 전담법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관예우나 후관예우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고경력자들이 들어와서, 법관 정년이 현재처럼 65세로 마감이 된다고 할 때 이분들이 50세 이상이나 55세 이 정도 들어왔을 때 장래에 연금도 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65세까지만 일하고 그다음에는 밖에 나가더라도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분들이 계속 끝까지 근무할 수 있을지,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장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전관예우는 더더욱 커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후관예우 문제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기타 저희들 사무분담에 관한 내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돌 관계가 없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들이 충분하다고는 저희들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국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현행법에도 보면 매년 채용과 관련된, 임용과 관련돼서 법사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실제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문제가 제기됐던 것들인데 지나치게 대형 로펌 출신 중심으로 임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경험이나 다양한 활동,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특수 분야에 대한 활동을 했던 분들이 실제 임용 과정에서는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임용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이런 문제 제기들도 있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아니면 기존과 상황이 달라진 게 있는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법관 선발을 함에 있어서 이분들이 수능시험 치르는 것처럼 점수를 잘 받아서 들어온다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외부에 있는 많은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 보면 오랜 기간 밖에 있을 때…… 다시 법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시다시피 갈수록 법이 복잡해지고 전문화가 되어 가는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인 법적 지식의 구비·함양은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와시할 수는 없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법조인으로서의 생활을 했다고 하면 단기간에 그런 공부를 통해서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테스트하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의미 있는 변화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는 시험 범위를 저희들이 처음에 어떤 영역에서 시험이 출제될 것인가라는 걸 갖다가 고지를 사전에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은 변화이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순전히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해야만 법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영역에서, 직역에서 충실히 법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오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우수하고 사명감 넘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김용민 위원 대형 로펌 출신 통계도 하나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통계는, 제가 통계치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이런 통계가, 저희들이 전체 법관으로 선발되는 인원을 비교해 보면 저희들 생각에는 점점 하향되고 있다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용민 위원 그 통계는 나중에 저희 법사위원님들께 한번 따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민 위원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정청래 오늘 법원행정처에서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설명 자료도 필요할 것 이고 해서,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다가 못 하신 부분이라든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료라든가 더 준비해서 제출할 자료들은 각 의원실로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 송석준 위원 천대엽 처장님, 이렇게 법조경력 요건 10년 제도 시행한 게 몇 년째 됐지요?

○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2011년에 설계해서 2013년도에 시작이 돼서 지금, 2011년부터 시작하면 14년 그리고 한.....

○ 송석준 위원 그래요.

전과 후를 비교해 보니까 부작용이 많다 이 말씀이지요?

○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부작용이라는 말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전제했던 여러 조건들이 현재 충족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가더라도 그 부분은 충족이 힘든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법관의.....

○ 송석준 위원 여러 가지 전과 후를 비교하는 과학적인 계량 분석은 좀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소송 등 여러 가지.....

○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저희들 해 왔고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송석준 위원 예, 그 자세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석준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조경력 요건을 좀 단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단축이 아니라 현재의 5년까지 확장된 이 기간, 적어도 이 지점에서는 이걸 고정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송석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공직에 있어 봤고 또 많은 법조인들을 만나 봐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 보면 굳이 법조경력 요건을 이렇게 길게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최소한의 검증 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1소위에 들어가서 심의하지는 않겠지만 법조경력 요건은 한 1년 정도로 그렇게 대폭 낮춰서 기본적인 법조인으로서의 소양을 테스트해서 문제가 없다면 바로 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모든 것에 새로운 테스트의 결과를 반영해서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검토해 주시고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송석준 위원 법무부장관님, 의사일정 4항과 관련해서 조정식 의원님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이 현 단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통합시스템의 구축이 먼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금 저희들 검토의견은, 현재 대항력 발생 시기가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로 되어 있는데 이걸 동시에 하도록 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원칙적 공시방법인 등기에 대한 예외 규정인데, 바로 다음 날이 아닌 그날로 할 때 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조금 있는 모양입니다. 이 점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예민한 이 권리 관계가 행정기관 서로 간의 정보의 불일치로 인해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명쾌하게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보면 제가 정말 갑갑한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면서 한 대표적 공약 중에 하나가 소위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하겠다, 이미 우리나라의 수준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충분히 만들 그런 수준에 와 있고 모든 여건도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이게 지연이 되고 있나요?

제가 사실 행정부에 있을 때가 별써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때도 이미 부처 간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갖고 많이 접근을 해 왔던 사항인데 아직도 이게 완성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부처 간에 이해관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장관님들께서 의식적으로 실태를 정확히 한번 진단해 보시고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모든 부처의 소관 정보는 국가가 갖고 있는 플랫폼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같은 시간에, 동시에 비교가 되고 서로 호환이 되면서 정말 국민들에게 이만큼의 정보의 문제로 인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점을 좀 유념하셔서 국가 정부 부처 간에 정보통합시스템 확실하게 점검해 주시고 관련 부처 관계 대책회의를 꼭 만들어 주시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에 법무부장관님이나와 무관한 업무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업무다 생각하시고 관계부처 회의에 안전도 요구하시고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 결과를 저에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박지원입니다.

법무부장관께서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 간첩죄 적용을 적국인 북한만 아니고 외국에 다 해야 된다 하는 데 있어 저는 동감입니다.

제가 국정원장을 경험해 보면 산업스파이 그리고 해킹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의 그 유명한 데이비드 생어 칼럼니스트는 지금 현재 21세기는 사이버 전쟁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실제로 북한도 우리를 해킹하고, 우리 산업 내용을 자꾸 해킹해서 가져갑니다만, 중국이고 뭐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보사를 보더라도 아니니까 저는 미국처럼 모든 외국에 대해서, 우방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술 스파이나 이런 문제는 반드시 간첩죄를 적용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법관 임용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변호사 경력을 좀 줄이자 하는 것에는 여야가 동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로펌에서 상당 기간 되면 거기에서 인정받아 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파트너도 되고 대표 변호사도 되는데 거기에서 처지는 사람이 법관으로 들어와서 되겠느냐 이런 법관의 자질 면도 굉장히 큰데…… 지금 여당에서는 3년, 야당에서는 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택일이 돼야 되는데 법원행정처 또는 대법원은 5년을 선호하십니까, 3년을 선호하십니까?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은 어느 의견이든지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해주시면 그걸 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을 거쳐서 지금 5년까지 온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소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면 저희들은 그 부분을 전적으로 수용할 생각입니다.

○**박지원 위원** 지금 말씀은 3년은 너무 짧고 5년은 너무 길다, 그러면 타협안이 4년 되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3년이라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정말로 순수한 공적 영역에서 법조인으로서 실력도 기르고 또 공적인 영역에서의 활약, 기여도 하고 이런 분들이라면 충분히 법관으로서 출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국에는 입법 사항으로 만들어진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의 혜안을 바라고만 있을 뿐입니다.

○**박지원 위원** 모든 사람이 사법시험, 로스쿨을 졸업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행정처에서 5년이다, 3년이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 참고가 되지, 흔들리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신다면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정도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정말 확실하게 법조인으로서의 삶을 살 사람이라면 저희들이 그중에서 더 좋은 인재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5년보다는 3년을 선호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지원 위원 개인적으로.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지원 위원 개인이 법원행정처장인데…… 그 생각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주호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형법 제98조 간첩죄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본에 유리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 경제, 심지어 영토, 대통령의 영토 수호 의무인 독도까지도 지금 일본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독도 앞바다에 일본 군함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하의 어떤 장관님은 우리 선조 국적이 일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윤석열 정부하에 간첩행위 하고 있는 이런 문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점을 간첩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은정 위원 지금 이 간첩죄에 대해서 일본과 관련해서, 외국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적국을? 그러면 우리나라의 군사나 경제, 심지어 영토와 관련한 국가적인 기밀에 대해서 간첩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대대적인 간첩죄 단속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주무부처 장관님으로서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이 법을 지금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간첩 혐의가 있다면 수사받게 될 것입니다.

○박은정 위원 그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간첩죄 빨리 개정해서 윤석열 정부하에 간첩행위 하고 있는 사람 없는지 대대적으로 쳐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물론 국가보안법이나 군사기밀 보호법이나 다른 법들이 있습니다만 형법 제98조가 간첩죄에 대한 일반법입니다. 지금 이 법 조항을 손보면서, 2항에 적국으로 되어 있고요—물론 2항 적국은 군사상 비밀로 되어 있는데—3항을 외국, 외국인,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면서 신설하는 안인데……

지금 헌법 제3조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북한은 반국가단체이지 적국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따라서 이 법을 개정하면서 2항에 적국 그것은 그대로 두되—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저는 외국, 외국인, 외국인 단체에 반국가단체도 포함시켜야지만 실효성이 더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보안법이나 다른 법이 있지만 간첩죄에 관한 일반법을 만들면서는 헌법과 판례에

의하면 적국에 북한이 포섭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의하면 명확하지요. 포섭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조직법 관련해서 3년으로 했을 때도 거기에 지원하는 법관들이 3년인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펙트럼은 3년에서부터 10년 이상 다양할 수도 있고, 5년일 때도 마찬가지일 텐데. 결국은 최소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3년으로 한다면 각 판사의 업무나 그다음에 고등법원인지 지방법원인지 여러 상황들에 따라서 다양한 선발 방법과 기준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발할 때 아까 김용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로펌에, 아니면 특정 대학에, 특정 로스쿨에 집중되는 현상은 어떻게든 보완하셔야겠지만 몇 년으로 하든지 간에 업무에 따라서 필요한 경력의 기준을 좀 다양하게 두고 선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용민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매년 결과 보고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토론해 주시지요.

○장경태 위원 처장님, 법조일원화가 어찌 됐건 세상 물정을 알고 사회생활을 하는 판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국민적 열망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런데 판사 장학생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대형 로펌에서 일이 년 씩 장학금 줘서, 판사 임용을 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생각되면 공부시킨다는 말들입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들어 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장경태 위원 그래서 대형 로펌뿐만 아니라 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변호사 활동하시거나…… 15년 차면 안 뽑는 건 아니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장동혁 의원님 안이나 이런 것들도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다양하게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판사 장학생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다양하게 뽑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태 위원 법무부장관님, 심우정 검찰총장후보자와는 친분이 있으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근무를 같이한 적이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같이하셨다. 그래서 만약에 심우정 총장후보자가 검찰총장 되시면 이번에는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말은 안 나오겠네요? 긴밀하게 상의는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죄송합니다만 검찰총장하고 장관이 패싱이라는 이야기는 나올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장경태 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저도 형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바인데요.

간첩죄는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거나 또 사회 혼란을 부추기거나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간첩죄의 적용은 사실상 북한 위주로 적용돼 왔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적대국이라고 돼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중국에 대한 어떠한 행위들도 적용이 되겠네요. 국익을 침해하는,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법무부장관 박성재 특별히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없지요. 그냥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국도 적용될 것이고 또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 행위들도 당연히 적용될 것이고, 미국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겠지요. 우리 산업기술을 미국으로 유출하는 행위들도 지금 많잖아요. 일본도 있을 수 있고, 중국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저는 간첩죄 적용, 형법이 개정되면 적극적으로 수사도 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행정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같은 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도 받고 또 은행 대출도 받았을 때 둘 중의 하나는 사기죄가 될 텐데, 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가 금융기관의 대출 피해 사기보다는 좀 더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더 무겁게 다가설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적으로는 은행이 더 먼저고 서민이 뒤로 밀리다 보니까 조정식 의원님이 이러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그 취지에는 우리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공감합니다.

○박균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제도를 더 우선시해야 법적 안정성이 유지된다 는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어떻습니까? 금융기관의 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써 등기소에서 저당 등기를 하기 전에 같은 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새로 돼 있는 것이 있는지 이것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으면 대출 사기도 함께 막고 서민들을 더 두텁게 보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협조체계 구축이 어려운 것일까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두 기관이 시스템을 정비하고 운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그렇지만 또 서민들이 이런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균택 위원** 예.

결국은 법원행정처와 행안부 간의 협조체계만 잘 구축된다고 한다면 이런 피해는 서로, 서민도 금융기관도 안 입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협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현재보다는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방안을 많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 **박균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 **김승원 위원** 대체토론은 종결해 주시고 법안1소위로 회부해 주시면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재 장관님과 천대엽 쳤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요청안과 제6항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유감 표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를 빌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상당히 모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빌린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개념이 이야기, 연극 등의 중심인물로 악당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뜻으로 악한, 악인. 세 번째 뜻으로 범죄자를 뜻합니다.

제가 악당, 악한, 악인, 범죄자입니까?

매우 불쾌하고요.

그런 악당 위원장과 같은 공간에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됩니까. 악당의 꼬봉들입니까?

○ **곽규택 위원** 악당 상대방이지요.

○ **위원장 정청래** 악당 상대방이에요? 그러면 곽규택 위원이 정의의 사도라도 됩니까?

○곽규택 위원 그렇게 불러 주시면 감사하지요.

○위원장 정청래 제가 보기에는 악당 이상의 악당이에요.

○유상범 위원 악당 이상의 악당, 무슨 단어가 그래요?

○위원장 정청래 가장 질 안 좋은 악당이지요.

그리고 유상범 간사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오늘은 빌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꼼수 위원장의 모습을 보인 날’이라며 ‘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개최했고 의사일정상 오늘은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법사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긴급 법안 상정을 요청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 의사일정 안건을 이 시나리오에 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공개회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차이가 나는 것은 좁혀 보고 토론하고 그리고 결론 내면 될 것을 왜 안 들어오시냐, 왜 이것이 채택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확증편향을 갖고 안 들어오시냐. 들어와서 본인들의 의견을 주장하면 될 것을 들어오지도 않고 왜 밖에 나가서 비난합니까? 비난을 하더라도 여기 와서 하고 주장은 하더라도 이 사무실에, 이 회의실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보고 꼼수라고 그러는데 저는 국회법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회법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는 일부개정법률안은 15일, 제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의결로 숙려기간을 생략할 수 있고요. 오늘도 법원조직법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의사 안건으로 채택을 했고 법사위로 방금 보냈습니다. 이게 꼼수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회법 58조(위원회의 심사) 규정에 보면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안건을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결로 소위원회에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새로 관련 안건이 올라온 것은 간사와 협의해서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직회부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다 보장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제가 불법을 저지르는 양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요? 제가 꼼수를 부린 적 있습니까?

국회법에 없는 것을, 그러한 것을 했을 때 꼼수라고 그러지요. 국회법에 보장돼 있는 대로, 국회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밖에 나가서 마치 제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국회법에 의거하지 않은 것처럼 꼼수 부리고 있다고 그렇게 위원장을 비난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할 말이 있지요. 저보고 악당이라고요? 악한이라고요, 악인이라고요? 범죄자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진정한 악당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송석준 위원 그것도 그렇게 비유하면 안 되지요.

○유상범 위원 그 얘기를 하면, 왜 또 그 얘기가 나옵니까.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해결할 건 여기서 해결해야지 자꾸 다른 데를 끌어

들이면 안 되지요.

○**위원장 정철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상 할아버지들이 일본 국적이라는 노동부장관을 어제 임명한 그것이 헌법을 부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악당 행위예요.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취임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헌법을 준수하는 겁니까, 지금?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우리 입장 좀 말씀드릴게요.

○**김승원 위원** 끼어들지 마세요.

○**위원장 정철래**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기자회견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사과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재발 방지 약속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위원장 정철래** 사과하세요.

○**김승원 위원** 먼저 사과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주세요.

○**위원장 정철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하세요.

○**유상범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주세요.

○**송석준 위원** 모든 것을 포함해서 답변을 할 거예요.

○**김승원 위원** 지나치지 않으셨습니까.

○**위원장 정철래** 사과하실 거면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유상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철래** 사과하실 거면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송석준 위원** 제가 제삼자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위원장님 입장은 존중을 해서.

○**위원장 정철래** 본인은 당사자지 제삼자가 아닙니다. 국어 교육을 못 받았습니까?

○**유상범 위원** 왜 이렇게 모욕적으로 말을 해요,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말이지!

○**위원장 정철래** 본인이 뭘 제삼자예요, 당사자지!

○**송석준 위원** 저도 당사자예요.

○**위원장 정철래** 그런데 왜 제삼자라고 그래요?

○**송석준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빌런에 대해서는 제가 제삼자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

○**위원장 정철래** 본인도 그 기자회견장에 참석해서 한 말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과하실 거면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송석준 위원** 발언권을 주고 말씀하세요, 정정당당하게.

○**위원장 정철래** 발언권 안 드려도 지금 얘기 잘하고 있구먼요. 얘기하지 마세요.

○**송석준 위원** 그런데 저쪽에서 안 들려요, 국민들은. 공정하게 답변을 할 수 있게…… 위원장님, 우리가 과하면 그때 또 제지하시면 되지요. 어떤 말을 할지 모르는데 아예 발

언권을 안 주시는 건 너무하잖아요.

○**김승원 위원** 지나친 부분은 좀 사과하시고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 위원(17인)**

곽규택 김승원 김용민 박균택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유상범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장동혁 전현희 정청래 주진우

○**첨가 위원(1인)**

조배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이화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